

#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2. 3.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조세연구소설치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의3 제3항(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의해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연구소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제시하여 건전한 학술연구문화를 정착하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세무와 회계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연구소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

1.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하에서 '위조'라 한다)
2.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하에서 '변조'라 한다)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발표하는 행위(이하에서 '표절'이라 한다)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라 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입히는 행위
6.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저자의 표시순서)** 논문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게재 등의 금지)** ① 논문의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종전에 발간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못한다.

② 투고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구물을 투고한 자는 연구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장이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내외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및 판정)**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 본 규정 위반에 관한 구체적 제보가 있거나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한 후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부정행위 등에 관한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조사의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10일 이내에 소장에게 보고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대상 행위
3. 관련된 증명서류
4. 부정행위 등 본 규정 위반 여부

② 조사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도 문서로서 통보한다.

**제10조 (징계)**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판명된 자에 대하여 연구소장에게 필요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부정행위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 경고, 일정기간 논문투고제한, 일정기간 연구용역 수주제한, 해당 연구용역계약의 해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 부 칙 (2012.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